

2026년 「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6년도 「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**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창업기업 스케일업 및 사업화 성과 창출
- 지원규모:** 총 21개사* 내외, 총 10억원

| 구분 | 지원 금액 | 모집 규모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예비창업자 | 3천만원 이내 | 3개사 내외 | 정부지원금의 10%이상 현금 부담 |
| 초기기업 | 5천만원 이내 | 18개사 내외 | |

* 모집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지원내용

- 사업화 컨설팅 지원: 기업진단 후 컨설팅 항목 결정

| 구분 | 컨설팅 지원 항목 | |
|--------|---|--|
| | 국내 사업화 컨설팅 | 해외 사업화 컨설팅 |
| 홍보·마케팅 | ① 브랜드/홍보/마케팅 전략 수립 ② 온라인/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③ 디자인·브랜드(BI/CI 등) 개발 컨설팅 ④ 인증,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⑤ 기타 | ① 브랜드/홍보/마케팅 전략 수립(글로벌/국가별) ② 지식재산권(국제상표, 특허 등) 관련 컨설팅 ③ 해외 온/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④ 수출 관련 컨설팅(수출검사, 서류대행 등) ⑤ 수출용 포장패키지 기획 컨설팅 ⑥ 기타 |
| 판로 개척 | ① 시장조사 및 분석 ② 공공판로 개척 지원 ③ 유통채널 확보 지원 ④ B2C, B2B 판매전략 수립 ⑤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(MOU체결 등) ⑥ 국내박람회·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 | ① 해외 PoC(시장조사, 마켓테스트 등) ② 권역별 해외 바이어 발굴 ③ 해외수출유통채널(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) ④ 해외 인허가/인증 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(MOU체결 등) ⑥ 해외박람회·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 |

- 사업화 자금지원: 예비창업자 3천만원, 초기기업 5천만원 이내 지원

| 구분 | 지원 내용 | 비고 |
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제품 제작 | • 재료비, 장비구매 및 시설대여, 위탁 제작 등 • 시제품 성능 개선, 기술개발 및 공정 고도화 |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 * [첨부3] |
| 제품 검증 | • 시험·분석, 상표·특허 획득, 인증, 현장실증 등 | |
| 홍보/마케팅 | • 카탈로그, 동영상, 홈페이지 제작 등 | |
| 박람회 참가 | •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, 부스 임차비(여비제외) | |
| 수출사업화 | • 물류지원, 포장지원(수출에 한함) | |

□ 성과목표

- 매출액 및 고용창출 목표는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며, 사업비 지원 항목에 따른 기업별 목표를 함께 제시

* 협약체결 시 기업별 성과목표 확정하되, 기업진단 및 컨설팅 후 성과목표 변경 가능

2

신청 · 접수

□ 신청기간: 2026. 2. 2.(월) ~ 3. 9.(월) 16:00까지

*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**접수 마감일 16시 이전에 신청 서류를 모두 등록**하여야 함

**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** 접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

□ 신청방법: 바다봄지식정보시스템(www.badabom.go.kr)에 접속하여 창업투자 공고/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
□ 신청자격

○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

-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
- 접수 마감일 기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'사업을 개시한 날'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 - 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 - 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- [첨부1]의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결정
- 공동대표 구성된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* 신청자격, 신청 제외 대상,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,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출서류

| 연번 | 신청 서류 | 비고 |
|----|---|----------------|
| ① | 프로그램 신청서, 사업계획서 | 공 통 |
| ② |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| |
| ③ |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| |
| ④ |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| 초기기업 필수 제출 |
| ⑤ | 사업자등록증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 | |
| ⑥ | 최근년도('23~'25년) 결산 재무제표 *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25년 재무제표 제출 | |
| ⑦ | 중소기업 확인서 | 예비창업자 필수 제출 |
| ⑧ | 등본 및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(총사업자등록내역) | |
| ⑨ | 신청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본인신용정보조회서 | 해당 시 |
| ⑩ |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, 인증 서류 등 | |

*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될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
*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,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□ **제외 대상** :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<신청제외 대상>

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)
- 기업,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동일(유사)한 아이템(기술)로 정부·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기업
-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*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* [첨부2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
- 3년 내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(사업화 자금 사업)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

4 선정절차 및 일정

□ **선정 일정**

| 선정절차 | 일정 | 세부내용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서 접수 | 2/2 ~ 3/9 | 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|
| ↓ | | |
| 자격검토 | 3/9 ~ 16 | 신청자격, 제외 대상, 제출서류 등 검토 |
| ↓ | | |
| 서류평가 | 3/17 ~ 20 |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(합격자 개별 통보) |
| ↓ | | |
| 발표평가 | 3/26 ~ 27 |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평가(합격자 개별 통보) |
| ↓ | | |
| 최종선정 | 3/30 | 운영위원회 심의 및 지원 대상기업 최종 선정 |

*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선정절차

- 사전검토: 신청서류 미제출, 신청제외 대상 탈락조치
- 서류평가: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기업(1.5배수) 선정

* (가점사항) 가점항목에 따라 서류평가에서 가점 부여

| 가점 규모 | 가점 항목 |
|-------|---|
| 3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('23~'25) *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(선발 시 가점 적용) |
| 1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5년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발굴 우수기업 • '24년 사업화 R&D 지원사업 우수 기업 •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우수물류신기술 지정 기술 보유기업 • 해양수산 R&D 기술이전 우수기업 |

- 해양수산 신산업* 및 전통산업 혁신 분야** 중점 선발

*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신산업(기술): ①친환경·첨단선박, ②스마트 블루 푸드, ③해양레저관광, ④해양바이오, ⑤해양에너지·자원

** 전통산업 혁신: 해운·조선·항만 등 전통산업에 디지털·친환경 첨단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분야(첨단기술: (디지털) AI, IoT, 빅데이터, 3D 프린팅 등 / (친환경) 탄소·오염물질저감 기술 등)

- 발표평가: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

<서류/발표 평가 운영>

-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별 점수 중 최고, 최저 점수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를 평점으로 함
- 평가 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 선정 (단,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)
- 평가항목 및 배점

| 평가항목 | 세부항목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 (20) | ■ 경영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 | 10 |
| | ■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,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등 | 10 |
|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(30) | ■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의 권리성 및 파급성 | 15 |
| | 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 | 15 |
| 사업성 (40) | ■ 목표시장 규모, 성장가능성 및 시장점유현황 | 20 |
| | ■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| 20 |
| 사업비 (10) | ■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| 10 |

5

신청 시 유의사항 및 선정자 의무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제재조치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하며, 기한 내 미 이행시 선정 취소 처리함
- 지원기업은 협약 종료 후 2년간 매출액, 고용창출, 투자실적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- 사업종료 이후에도 동일(유사)한 아이템(기술)로 정부·지자체 창업지원 사업 등의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- 정부지원금 집행은 관리지침(대상자 최종 선정 알림 시 제공)에 따라 집행
 - * 사업비는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집행내역에 대해 증빙 서류를 갖추어 바다봄시스템(www.badabom.go.kr)에 등록

6

신청 문의

□ 사업내용 및 신청 등 문의

| 구분 | 소속 | 연락처 | 이메일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전담 기관 |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| 02-3460-0375 | mkb25@kimst.re.kr |

첨부 1

창업 인정 기준

| 기업 구분 | 상세 구분 | | 창업여부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개인기업 | 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3년 이내 | | 창업 기본요건 | |
| | 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 | 동종 사업 개시 | 창업아님 | |
| | | 이종 | 창업 |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| - | 창업아님 |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| 이종창업 | - | 창업 |
| | | 동종창업 | 폐업 3년 초과 | 창업 |
| | | | 폐업 3년 까지 | 창업아님 |
| | | | 부도/파산 - 2년 초과 | 창업 |
| 부도/파산 - 2년 까지 | | | 창업아님 | |
|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| - | 창업 | | |
| 법인기업 | 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3년 이내 | | 창업 기본요건 | |
| | 자회사 여부 |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| 창업아님 | |
| | 조직변경 | 동종업종 유지 | 창업아님 | |
| | | 이종업종 변경 | 창업 |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| 이종창업 | - | 창업 |
| | | 동종창업 | 동일인인 경우 | 창업아님 |
| | | | 발행주식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| 창업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| 이종창업 | - | 창업 |
| | | 동종창업 | 폐업 3년 초과 | 창업 |
| | | | 부도/파산 - 2년 초과 | 창업 |
| |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| - | 창업 | |

* 업종은 ‘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’를 기준으로 하며, 세세분류(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“동종업종” (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 참조)

첨부 2**지원제외 대상 업종**

※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

| 구분 | 대상 업종 | 코드번호 세세분류 |
|----|---|--------------|
| 1 | 일반유희주점업 | 65211 |
| 2 | 무도유희주점업 | 56212 |
| 3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 9124 |
| 4 |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| - |

*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를 기준으로 함

1. 사업비 구분 및 증빙서류

| 지원항목 | 세목 | 내역 |
|-----------|-------|--|
| 시제품 제작 | 재료비 | <p><재료비는 정부지원금의 40%를 초과할 수 없음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사업계획서 상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(배송비 포함 가능) * 제품 제작비 제외 *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만 집행 가능 * 금속, 보석,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, 사업계획서의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 연관성이 높고, 전담기관이 승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*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|
| | 시설임차료 | <p><임차료는 정부지원금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사업화를 목적으로 시제품 등 생산을 위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* 전담기관 담당자가 불시에 해당 공간 방문 등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 여부 및 사용 목적 확인 * 협약기간 내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공장등록증 등에서 확인되는 기존 주소지 불가) * 관리비, 보증금 등 월 임대료 제외 비용은 집행 불가 * 거주형태 공간의 임차비 집행 불가 * 사무용품, 집기, 가구, 생활가전, 노트북, 태블릿 PC, 차량 등은 집행 불가 |
| | 외주용역비 | <p><외주용역비는 정부지원금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지원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개발·제작할 수 없는 경우, 외부 업체에 의뢰·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 * 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,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 * 관련 증빙자료(사업자등록증 등) 제출 필수 * 외주용역비는 수행 완료 후 일시납이 원칙 |
| | 기술이전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지원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,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 |

| 지원항목 | 세목 | 내역 |
|--------|-----------|---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집행과정은 이전기관 내부 규정 우선,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계약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, 이전금액, 사용기간, 이전내용,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기술이전 관련 증빙자료 첨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법인으로부터의 기술이전만 인정 기술이전 금액은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만 인정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 제외 |
| | 기술개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* 사업기간내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건에 한함 |
| 제품 검증 | 시험·분석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, 제품·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 |
| | 상표·특허 취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사업계획서 상 사업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(산업재산권, 특허 출원 및 등록비, S/W등록 포함 저작권 등)의 출원·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* 협약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선행기술조사비,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* 성공보수,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소요비용은 집행 불가 * 출원인(최종권리권자)은 협약기업명이어야 함(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) |
| | 인증 취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국내외 인증 신규 취득 비용 사업화 및 제품, 기술, 서비스 수출을 위한 해외 거래처 요구 인증 취득 비용 집행 가능 |
| 기업 홍보 | 광고 선전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, 포장디자인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온라인 홍보비, 온라인쇼핑몰 입점비, 일간지 등의 광고비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|
| | 해외 판촉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제품, 서비스, 기술 수출을 위하여 해외에서 진행하는 온·오프라인 판촉 행사 집행비용 * 입점비, 임차비, 장치비, 홍보비, 통역 등 |
| 박람회 참가 | 국내/해외 박람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/해외 박람회 참가등록비, 부스 임차비, 장치비, 통역비 등 *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만 가능 * 여비 집행 불가 |

| 지원항목 | 세목 | 내역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
| | 학회 및 세미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제품 검증 등을 위하여 지원기업 사업수행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 *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만 가능 |
| 수출 사업화 지원 | 물류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시제품, EMS등 해외물류 이용 대금, 운반비, 보관료 등 실 소요비용 지원 |
| | 포장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포장디자인, 동판, 금형 제작에 든 비용으로 현지어 라벨링 제작 및 등록 비용 등 지원 * 포장재 개선 전/후 비교 필수 |
| | 통관 운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사업화 제품 통관 시 발생하는 비용, 통관 관련 검사비, 현지 보관 및 창고비용, Ship-back(보관, 보험, 운송, 재적재) 비용 등 * 관세는 지원 제외 |
| | 해외현지 시장조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의 : 상품 개선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, 소비자 관능조사 비용 및 수출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 * 여비 지원 제외 |

*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

*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, 부가세 등은 집행 불인정

2.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

- 유흥업종 : '한국표준산업분류'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
- 위생업종 : 이.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
- 레저업종 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
- 사행업종 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- 기타업종 :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

3. 비목별 집행증빙서류

| 지원항목 | 세목 | 내역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공통 | 공통 | • 비교견적서 : 2천만원(부가세 포함) 이상 집행하는 경우 제출 필수 |
| 시제품 제작 | 재료비 |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견적서, 검수조서(증빙사진 포함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 |
| | 시설임차료 | • 세금계산서, 임대 공간 증빙사진, 임대차계약서, 거래내역서 |
| | 외주용역비 | • 세금계산서, 계약서(과업내용포함), 결과보고서, 검수조서(증빙사진 포함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 • 필요시 제출 : 선급금이행보증보험(각서), 외주용역 심의요청서 등 |
| | 기술이전비 |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, 기술이전계약서, 완료보고서 또는 기술이전기업의 승인 공문 |
| | 기술개발 | • 계획서, 결과보고서,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계약서(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) |
| 제품 검증 | 시험·분석비 |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시험분석서 또는 신청서, 거래내역서 |
| | 상표·특허 취득 |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계약서(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), 출원(등록)청구서·등록증 또는 신청서, 관납료 영수증 |
| | 인증 취득 |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인증신청서, 인증서, 거래내역서 |
| 기업 홍보 | 광고 선전비 |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계약서(과업내용 포함), 결과보고, 검수확인서(증빙사진), 홍보제작물 등 |
| | 해외 판촉비 |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. 판촉 결과보고서, 임차 계약서, 거래내역서, 통역비 영수증, 통역요원 ID사본, 통역활동 사진 등 제출 |
| 박람회 참가 | 국내/해외 박람회 |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전시회(박람회) 카탈로그, 참가 확인 문서, 비용 납부요청 공문(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) • 통역비 영수증, 통역요원 ID사본, 통역활동 사진 제출 |
| | 학회 및 세미나 | • 학회(세미나) 카탈로그, 참가 확인 문서, 비용 납부요청 공문(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) |
| 수출 사업화 지원 | 물류지원 |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수출신고필증, 샘플 송부 및 수령 사진, 인보이스, 지출내역 |
| | 포장개선 | 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결과보고서(사진), 계약서, 지출내역 |
| | 통관 운송 | • 수출신고필증, 샘플 송부 및 수령 사진, 인보이스, 지출내역 |
| | 해외현지 시장조사 | • 결과보고서,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계약서(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) |